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438호(號) 1935(昭和 10)년 3월 1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15호(號)

1934(昭和 9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41호(號)(내선만대수소하물연대운송규칙[內鮮滿臺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] 제1조[條]에 의[依]한 연대운송[連帶運送]의 범위[範圍]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5(昭和 10)년 3월 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조(條) 별표(別表) (4)철도성선(鐵道省線)(남조선철도회사선[南朝鮮鐵道會社線] 및 가와사키기선[川崎汽船] 여수항로경유[麗水航路經由])의 부문[部]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(4)의	철도성선(鐵道省線) (기타규슈상선항로경유 [北九州商船航路經由])	국선(國線) 부산(釜山) 기타규슈상선항로(北九州商船航路) 간(間) 하카타(博多) 기타규슈상선항로(北九州商船航路) 간(間) 하카타(博多) 성선(省線)	수하물(手荷物), 부수소하물(附隨小荷物) 단(但) 하기[左記]의 것을 취급(取扱)하지 아니함 차량류(車輛類) 자전거[自転車] 및 자동자전거(自動自転車) 를 제[除]함, 동물(動物)
------	---	---	---

제2조(條) 중(中) 제7호(號)를 제8호(號)로, 제6호(號)를 제7호(號)로 개정(改正)하고, 제5호(號)의 다음에 아래[左]와 같이 추가(追加)함.

6 기타규슈상선(北九州商船)이란 기타규슈상선주식회사(北九州商船株式會社)를 말함.